

# 로보스타 거래처 선정 및 관리규정

## 제 1조(목적)

본 표준은 주식회사 로보스타(이하 "당사")의 협력회사 선정 및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정한 다.

## 제 2조(용어의 정의)

1. "협력회사"라 함은 당사의 원자재, 외주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회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회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 3조(협력회사의 선정 기준)

협력회사로 등록되기 위한 최소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당사가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면허, 인허가, 특허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당사가 요청하는 필요서류(별첨1)를 제출해야 한다.
3. 최근 5년간 하도급법을 포함한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협력회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심사 개시 30일전에 전자매체(로보스타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제 4조(협력회사의 선정 절차 및 결과 공개)

1. 당사는 등록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2. 미선정업체에 대해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 제공한다.
5.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 신청 기회를 준다.

# 로보스타 거래처 선정 및 관리규정

## 제 5조(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협력회사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제 6조(협력회사의 등록취소 기준)

협력회사의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1)정기평가 결과 로보스타 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
- 2)고의로 품질, 수량, 납기 등에서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당사에 손실을 초래한 업체
- 3)당사의 정당한 개선요청, 또는 경고 서한을 통지 받은 후 3개월 이상이 경과되어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지속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4)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으로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5)당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인지한 영업비밀, 기술 및 생산 정보 등을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업체
- 6)당사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계약과 관련하여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간의 거래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
- 7)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
- 8)환경, 안전,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
- 9)기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당사와의 거래가 지속불가능한 업체

### 2.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 1)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2)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3)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4)협력회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를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회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20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업체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취소확정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중단거래선을 거래선으로 재등록 하고자 할 경우 거래정지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증빙을 첨부하여 대표이사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정일자 : 2025-01-10

# 로보스타 거래처 선정 및 관리규정

표준번호 : RS-A2-6000N

3/5

개정일자 :

개정번호 :

## 제 7조(표준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 하는 제재 조치를 하고 이의 기준은 당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본 표준은 2025.01.10부터 시행한다.

제정일자 : 2025-01-10

# 로보스타 거래처 선정 및 관리규정

표준번호 : RS-A2-6000N

4/5

개정일자 :

개정번호 :

## 별첨 1. 거래처 등록 요청서

### 거래처 등록 요청서

문서번호	
기안일	
기안자	
기안부서	

기안	

접수	

관련부서 기록사항			
거래처 구분	● 판매 ○ 구매 ○ 해외 ○ 기타		
기안자	필수값 입니다.	업체선정자	필수값 입니다.
선정자 관계유무	● 있음 ○ 없음	선정자 관계상세	필수값 입니다.
업체 개발방법	필수값 입니다.	업체 개발상세	필수값 입니다.
등록(수정) 사유	필수값 입니다.	최초 거래예상 금액(원)	필수값 입니다.
여신한도 금액(단위 : 백만원)	필수값 입니다.	담보유무	● 담보 ○ 신용
거래 ITEM	필수값 입니다.	결제조건	필수값 입니다.
품목구분	● 가공 ○ 외주 ○ 구매	평가대상	● 평가 ○ 비평가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인적사항			
거래처코드		거래처명	필수값 입니다.
대표자	필수값 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값 입니다.
기업구분	● 법인 ○ 개인	법인(개인) 번호	필수값 입니다.
국내외구분	● 국내 ○ 해외	사업개시일	필수값 입니다.
업태	필수값 입니다.	업종	필수값 입니다.
주소	필수값 입니다.	우편번호	필수값 입니다.
전화번호	필수값 입니다.	팩스번호	필수값 입니다.
업체담당자	필수값 입니다.	이메일 주소	필수값 입니다.
담당자 연락처	필수값 입니다.	SMS	

제정일자 : 2025-01-10

# 로보스타 거래처 선정 및 관리규정

표준번호 : RS-A2-6000N

5/5

개정일자 :

개정번호 :

### 거래처 정보 조회서

단위 : [백만원, %]

신용등급	필수값 입니다.	자산	필수값 입니다.
매출액	필수값 입니다.	부채	필수값 입니다.
매출원가	필수값 입니다.	자본	필수값 입니다.
매출이익	필수값 입니다.	부채비율	필수값 입니다.
영업이익	필수값 입니다.	평가	필수값 입니다.

	판매처	구매처	해외(판매처)	해외(구매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3. 수익인식 검토서 4. 법인 : 최근 1년 재무제표증명원 1부 개인 : 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서 1부 5. 담보서류 (담보 설정 필요 업체 시)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법인: 최근 1년 재무제표증명원 1부 개인: 최근 1년 소득금액 증명서 1부 4. 서약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통장인감과 다를시 사용인감계) - 서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제외 모든 서류 원본 대조필 *접수 담당자- 회계금융팀 김석현 선임(혹은, 회계금융팀 매입담당)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2. 발주서 (PO) 또는 계약서 1부 3. 수익인식 검토서 (신규거래처 등록 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2. 은행수취계좌확인서 1부 (은행 수취본) 3. 발주서 (PO) 또는 계약서 1부 *접수 담당자- 회계금융팀 김석현 선임(혹은, 회계금융팀 매입담당)

(주) 로보스타